

불이익 예방·정재유실 각성 '계기'

조계종 '불교판례집' 발간 의의

스님의 법적수명 및 수입은 얼마일까? 서울민사지방법원은 94년 화가이자 납골당을 운영하던 모사찰 주지스님이 교동사그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스님의 수명을 70세, 월수입을 1백25만7천7백59원(종교관계 종사자로서 10년이 상 경력을 가진 남자)'으로 인정하고 배상액을 평가했다. 또한 "사찰주지의 납골당 운영은 주지 및 장의업자로서의 수입원과 독립된 별개의 수입원을 이루는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미술가로서의 활동도 주업인 주지로서의 종교활동의 범위내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발간한 <불교판례집>은 이처럼 종교활동과 관련,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법률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법률적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이외에 몇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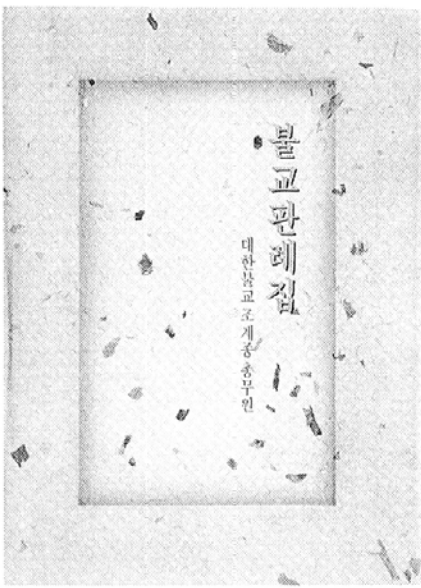
첫째로 불교자료의 정리이다. 이번 <불교판례집>은 그동안 방치되었던 종단의 자료가 처음으로 정리되어 종단과 사찰 운영에 기초자료로 활용될수 있다는데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불교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서관리에 대한 무감각속에서 해방이후 50년간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가공해 일반에 선보인 것은 종단자료를 종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료유형의 시발점으로 여겨진다.

둘째는 판례를 통해 현대 한국불교사를 볼수 있다는 점이다. 판례집에 나타난 사례를 시기별로 나누어 볼 때 몇가지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해방직후인 50년대는 불법법과 관련한 위헌여부의 판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60년 대법원은 '일

제때부터 내려오던 사찰령을 대한민국의 헌법공포, 시행후에도 헌법정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해 불교재산관리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사찰령의 독소조항이 잔존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50년대에 이어 60년대는 조, 태본규에 따른 주지대표권, 사찰등록과 관련한 소송으로 유달리 재판이 많았던 시기로 보인다. 특히 판례집에는 이 시기에 불교재산과 관련한 판례가 많아 당시 정재가 망실되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70년대 후반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는 종권이 안정되면서 일상종무활동과 관련된 선진적인 판례가 두드러져 사찰 자치권 권리확보와 불교의 대사회적역할을 엿볼수 있다. 대표적인 판례로는 1994년 전통사찰 봉은사가 낸 사찰환경정비해



△조계종 총무원은 해방이후 50년간의 불교관련 판례를 모아 책으로 간행했다.

각각했으나 이 소송을 통한 불교계와 시민의 관심집중으로 다음해에 정부가 공휴일로 지정해 의의가 깊은 판례로 남아있다. 판례집에 가장 많은 판례가 수록된 사람은 속초 보광사로 사찰의 대표권, 종단등록, 상속, 토지소유권, 증여뿐 아니라 형사소송등 9개의 판례가 수록되어 있어 불교관련 판례의 모든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밖에도 판례집에는 '타종교를 믿는 처를 두고 승려가 된 것이 악의 유기인지여부' '신도들의 시주로 형성된 불교재산이 신도들의 합유인지여부' '불상을 절도했을 경우 절도죄 성립여부' '주지취임을 위한 불법점유의 배제와 주거침입죄 성부' 등의 판례도 실고있다.

이번 판례집 발간에 자문으로 참여한 양영태변호사는 "판례가 확립되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며 "불교계 소송의 유형은 정형화 되어 있어 판례를 숙지하면 종도의 권리보호와 재산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양변호사는 또한 "최근 법원도 종단내부의 문제를 자체해결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불교내부의 문제를 세간법에 의존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종헌중범에 따라 해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엽 기자

해방후 50년간 방치자료 체계 정리 사찰서 행정·재무등 활용가치 높아

소송, 1995년 서울지법은 "전통사찰인 봉은사와 1백m 떨어져 87m 높이의 고층건물을 지음으로써 사찰이 입게될 경관적 종교적 문화적 역사적 환경침해를 그 피해의 성질상 회복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불이익을 부담하여 환경이익침해방지청구권에 기하여 이 건축공사의 금지청구권을 갖는다"는 유망한 판례를 남겼다.

이번 판례집에서 눈길을 끄는 판례로

1972년 대법원이 한국불교의 진흥과 승종진작, 청정비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통합종단 조계종의 합법성과 공식성을 천명한 사법판결을 내리 비구, 대처분쟁이 법률적으로 완결됐으나 아직도 분규 사찰이 남아있어 실제로는 분규가 계속되고 있다.

1974년 용태연변호사가 청구한 석단일공휴권 지정에 관한 소는 고등법원에서

있어 판례를 숙지하면 종도의 권리보호와 재산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양변호사는 또한 "최근 법원도 종단내부의 문제를 자체해결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불교내부의 문제를 세간법에 의존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종헌중범에 따라 해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시론 종교와 정치의 분리

최근 선거국면과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정치와 종교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다. 각 지역의 종교단체가 학연, 지연 대신에 4·11총선에 임후보한 후보들이 가장 눈독들이는 황금표밭의 구심점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거니와 특정 종교 편향의 제도화가 시도되고 있다는 데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통합의 특정 종교가 사회적 이해관계에 깊숙히 자리잡음으로써 야기되고 있어 더욱 충격적이다.

정부가 양성하는 종교인

예컨대, 이미 발표된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Ⅱ)>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 특히 성직자 양성 전문대학원 제도는 기독교 신학을 중심으로 교육안의 틀이 짜여졌다는 점에서 명백한 종교적 편향을 노출하고 있다.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첫번째의 것은, 정부주도의 교육으로 성직자를 양성하겠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신학과 서구식 교육을 근거로 성직자 교육제도의 틀을 구축한 점이다. 종교간에 성직자 배출과 교육방식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방식의 종교교육에 맞추려는 것은 특정 종교 편향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종교가 정치적 총리와 직접 관련이 없던 과거와는 달리 현정권이 이 종교를 정치구조에 깊이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며, 결국 현 정부의 정책운동과 권력행사방식이 종교적 편향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종교간 마찰은 물론 국민의 감성까지도 자극하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또 다른 편향적 제도는 '기독교 정당론'이다. 이 주장자들은 기독교 정당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원본적 수준에서 유럽의 기독교 정당사를 거론한다. 기독교 정당은 교리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적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즉 프랑스 혁명이나 사회주의 운동, 1870년대 소독일통일 등 기독교 문화가 위기에 처하고 교회가 세속의 권위에 눌릴 때 기독교 정당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정당은 개혁적이며 현실정치에 대한 실망과 질적 개선의 요구, 정치권력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이 오늘날 한국에서 기독교 정당의 필요성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극단적인 견해로, 기독교인의 일반정당참여나 시민운동으로는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기독교인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정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 정당론'은 정복의 종교, 지배의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교회와 기독교 정당이 일치할 수 없다는 유럽의 역사적 경험을 간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종교 사회인 우리의 정치문화적 특성도 배제하고 있다. 다종교에서 유일신으로의 통합과 정복의 역사가 바로 기독교 역사였음을 '세계관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정당론'은 종교적 지배와 정복을 새로운 원리로 수용하겠다는 것에 다를 바가 아니며, 종교적 다원사회의 한국사회의 정치문화를 새로운 지배의 문화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극심한 지역주의에 종교갈등까지 야기시켜 사회를 더욱 혼란시킬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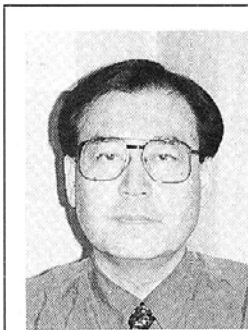
비록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대통령이 약속(?)이 있었지만 문제는 현 정부가 종교적 편향을 초기부터 보여왔다는 데에 있다. 이것이 어떠한 위기상태를 몰고 올 지는 명약관화하다. 역사적으로 종교가 비판을 받은 것은 종교의 정치적 관계 안에서의 기능 때문이었다. 참다운 인간의 해방을 위해 정치의 도를 넘어 반대로 정치를 종교적으로 역이용하여 종교인의 배를 채웠으며 그 결과로 인간을 억압했기 때문이었다. 역사적으로 종교의 지배는 지배의 종교였던 것이다. 왕조의 제단, 돈과

성직자의 밀접한 연결은 언제나 비탄의 대상이었다. 권력과 종교가 손잡고 재산과 성직자들이 한 묶음 속에서 뒹굴었던 것이, 그리고 그것의 밑거름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세계관의 역사가 보여준다. 또 다른 한편 권력은 권력의 유지를 위해 종교를 필요로 했다. 권력의 정당성을 종교의 교리로 대체했고, 이 속에서 인간의 종교적 자유는 유린되기 일쑤였다.

근원적인 치유책 찾아야

우리는 현국면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종교적 편향의 뿌리를 어디에 있으며, 항속적 방치책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 만약 통수권자의 과잉영향과 관료적 편향이 여기에 발견된다면 보다 근원적인 치유책을 찾아야 한다.

정치와 종교는 사회적 역할에서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 종교는 의연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정치행태를 비판할 수는 있어도 정치에의 직접적 참여는 절대적으로 삼가해야 한다. 더욱이 특정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는 폐단은 한국의 정치발전 에 역행하는 것이다. 종교상의 국민감정은 논리와 이성을 초월하며, 대통령은 국민들의 이런 감정적, 정서적인 종교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김진철 <동국대 정치외교학 교수>

포교환경 쇄신·제도보장 '의지'

초안 주요내용

- 포교예산 15% 편성
- 상임포교사 배치 의무화
- 포교국장 임기 보장
- 재가신도 조직 구성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교구본사의 예산편성시 15% 이상을 포교예산으로 책정하고 상임포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본말사 포교규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포교원은 지난 5일 열린 교구본사 포교국장회의에 '포교규정' 초안을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4월 중순 '포교규정'을 제정, 공포할 예정이다.

포교원은 '포교규정' 제정과 관련 "효

조계종 '본말사 포교규정' 추진 배경

포교지침 구체화... 공포땀 종령 효력 교구본사·주요사찰 협조가 성공관건

율적이고 통일적인 포교를 위한 본말사의 포교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포교법에 명시된 포교지침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포교규정은 포교법 제19조에 의거해 종령의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교원이 마련한 '포교규정' 초안에는 ▲정기법회 및 계승법 회회의 개설 ▲재가신도 교육과정 운영 및 재가신도 조직 구성 ▲복지·교육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포교사 지단의 결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포교국장 임기보장(4년) ▲본사 예산액의 15% 이상을 포교예산으로 책정토록 했다. 이 수치는 조계종 전체 예산 가운데 15%가 포교원 예산으로 책정된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교구본사 중심의 포교활동에 가장 큰 장애요소로 지적됐던 포교국장의 임기불안정, 예산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함께 초안에는 "규정에 제시한 의무사항을 이행여부를 평가해 주지 인사에 반영하도록 인사권자에게 건의한다"고 밝혀 강력한 실효의지를 명시했다.

정성운 기자

경 창 업 축

“행함이 없는 공부, 실천이 따르지 않는 공부는 생명이 없는 지식을 쌓는 데 불과하다.
백 번 보는 것이 한 번 행하는 것만 못하니 참 지혜란 실천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가령 올챙이가 개구리에게 흙냄새에 대해 물었을 때 개구리가 수천 마디의 말로 설명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올챙이가 개구리 되어 물에 올라가 보는 경우만 못한 것이다.”

商號: 靑業建設株式會社
社長: 代表理事 明乙植
所在地: 서울特別市 江南區 道谷洞 419番地 靑松빌딩 301號
電話: (02)576-9271 FAX: 576-9270
設立日時: 1995. 10. 25
資本金: 一金 一億吾百萬圓整
保有免許: 設備工事場 (95 서울1234號)
營業種目: 綜合프랜트의 機械 配管 設置 및 保溫保冷工事
精油 및 石油化學設備部門
보일러 및 發電設備部門
製鐵 시멘트 設備
環境設備 및 食品加工設備
各種 탱크 및 GAS HOLDER 設備
冷暖房 衛生 空造設備